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일부개정법률안(4건)

검 토 보 고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제10028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제10560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제10561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제10562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 요	1
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8호)	1
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0호)	2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1호) ..	3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2호) ·	4
II. 총괄적 검토	5
III. 개정안별 검토	8
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I. 개 요

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4. 22.
- (3) 회 부 일 : 2025. 4.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5. 20.
- (3) 회 부 일 : 2025. 5.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 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2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5. 20.
- (3) 회 부 일 : 2025. 5.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5. 20.
- (3) 회 부 일 : 2025. 5.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 정책 및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총괄적 검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¹⁾, “위원회”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의미함.
- 정부는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30% 이상을 정비하려는 목표에 따라 2022년 9월 정부위원회 636개를 점검하여 이 중 유사·중복 및 운영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245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였음.
-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단순한 자문 성격의 위원회 등은 폐지하되 필요시 비상설 회의체 또는 협의체로 운영하도록 하고,

하나의 법률에서 두 개 이상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거나,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르더라도 설치 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 심의 대상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정비한다는 방침임.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기준 >

	정비 대상	정비안
폐지	①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③공무원들로만 구성 or 민간위원 참여 저조 위원회 ④설치목적 기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 감소 위원회 ⑤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폐 지 ※ 필요시, 비상설 회의체 혹은 협의체로 운영
통합	⑥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	유사 위원회 간 통합

※ 출처 : 행정안전부

□ 그간 위원회 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제21대국회에서 27건의 일괄 법률안과 5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정비 대상 위원회 245개 중 126개(약 51.8%)의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일괄법률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2건의 일괄 법률안은 수정가결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건의 일괄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제21대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일괄법률안 현황 >

의안번호	법안명	현황	소관
제1767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복지부
제1770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복지부
제1767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 폐기	식약처
제1768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 폐기	식약처

□ 이에 정부는 제21대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건의 일괄법률안을 제22대국회에서 1건의 일괄법률안(「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4건의 개정안으로 다시 제출한 것임.

□ 4건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소속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개정 >

국무조정실 소속 식품안전정책협의회

< 현행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 개정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심의위원회

Ⅲ. 개정안별 검토

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안 제6조),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소속의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변경하면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며, 민간위원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한편(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회를 자문단으로 변경하고(안 제12조),

위원의 임기와 의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 등임(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 ----- ----- 국무조정실장-----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② 국무조정실장은 ----- ----- ----- ----- 식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

현행	개정안
<u>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③ ~ ⑥ (생략)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u>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u> 1. ~ 6.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u> 1. <u>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u> 2. <u>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u> <신설>	<u>의·조정을</u> ----- ----- <u>수립</u> <u>하여야</u>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식품안전정책협의회) ① ----- ----- <u>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 -. ② <u>협의회-----</u> <u>협의·조정한다.</u> 1. ~ 6.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u>협의</u> <u>회-----</u> -----. ② <u>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u> 1. <u>교육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u> 2.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u> ③ <u>협의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된다.</u>

현행	개정안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관계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u> <u><신 설></u>	④ ----- ----- <u>관계 공무원</u> ----- ----- <u>협의회</u> -----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u>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②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0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u> ② <u>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 <u>협회의</u>-----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u> ②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삭 제></u>
제12조(전문위원회) ① <u>위원회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제12조(자문단) ① <u>협회의는 식품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단----- -----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삭 제>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 및 조사·분석 요청)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시험·분석·연구기관에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료 및 조사·분석 요청) <u>협의회</u> ----- ----- ----- ----- -----.
제15조(긴급대응) ① (생략)	제15조(긴급대응)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산·판매등이 되고 있는 식품등이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우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위	② ----- ----- ----- ----- ----- ----- ----- ----- ----- ----- ----- <u>협의회의</u>

현행	개정안
<u>원회의 심의를 거쳐</u> 해당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u>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u> 긴급대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u>위원회의 심의를 거칠</u> 수 있다. 1. ~ 6. (생략) ③ <u>위원회</u>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긴급대응방안을 지체 없이 <u>심의</u>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u>행한</u>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u>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0조(위해성평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위해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생략)	<u>협의·조정을</u> ----- -----. --- <u>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치는</u> ----- ----- ----- <u>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칠</u> -----. 1. ~ 6. (현행과 같음) ③ <u>협의회</u>----- ----- - <u>협의·조정</u>----- -----. ④ ----- ----- <u>한</u> ----- ----- <u>협의회</u>-----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위해성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협의회의 협의·조정을</u>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조²⁾에서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현행법 제8조³⁾에 따라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 등 공무원인 위원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됨.
-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소속의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며,

2)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

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신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은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및 식품안전정책협의회(안) 비교>

구 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정안에 따른 식품안전정책협의회(안)
근거조항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소속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위원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위원구성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교육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기 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 기본계획 -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 기본계획 -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개정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위원 구성상 적기 개최가 어렵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등 자문 성격이 강하므로, 위원회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에 따른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참고로, 최근 4년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개최횟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5. 국무회의)에 따라 민간위원 임기 종료('21.1.23~'23.1.22) 후 재위촉을 하지 않고 있어, 전문위원회는 2023년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음.

< 최근 4년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단위: 회)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식품안전정책위원회	2	1	0	1
전문위원회(6개 분야)	6	7	0	0

자료: 식약처

□ 그런데,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 제6조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6조에서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4)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을 말하는데,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국무총리 보좌기관⁵⁾인 국무조정실장이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대로 현행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위원 구성상 적기 개최가 어렵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와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협의회를 두도록 하되,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을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협의회 관련 참고 입법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⑥ (생략)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4)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5) 「정부조직법」 제18조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협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국가정보원차장·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대검찰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경찰청차장·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언론계·기관·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⑥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둘째**, 개정안은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둘 수 있도록 한 ‘전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협의회는 식품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자문단을 두어 효율적으로 자문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나, 현행법상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은 반드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민간위원 포함)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는데⁶⁾, 개

6)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안과 같이 식품안전정책협의회(민간위원 제외)로 변경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자문이 임의 사항으로 바뀌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식품안전정책협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내용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은 ① 유전자변형 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안전성심사위원회’(「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 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심의하는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를 폐지하되,
- 각각의 위원회의 기능을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기능과 위원 수를 이에 맞게 늘리고, 위원 구성을 개편하려는 것임(「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 및 제58조).

현행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0호)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생략)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삭 제>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⑤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삭 제>

(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생 략)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생 략)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문한 사항에 한정한다)

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나.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다.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라.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에 관한 사항

나. 어린이식생활법 제26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
다.

1. 2. (생략)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획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식품위
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자문사항에 관한 조사·심
의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식품등
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나. 어린이식생활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
요한 사항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자문하는 사
항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 200명 -----
-----.

② ----- 각 호
의 -----

----- . 이 경우 제1호의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
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또
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
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

4. (생 략) 5. <u>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③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④ ~ ⑥ (생 략)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u>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은 사람</u> 4. (현행과 같음) 5. <u>다음 각 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가. <u>식품위생·식품영양</u> 나. <u>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의 표시·광고</u> 다. <u>유전자변형식품등</u> ③ (현행과 같음) ④ <u>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⑤ <u>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u>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심의위원회</u>----- ----- -----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된 사항은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조사·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	

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9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1호)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생 략)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 ----- -----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5조(어린이식 생활안전관리위원회)	제25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 등에 관한 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문하는 사항
4.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	

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u>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 <u>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2호)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u>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u>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u> <u>1.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에 관한 사항</u> <u>2.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u> <u>3.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호에 따른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표시·광고: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3. (생 략)	② ----- ----- ----- --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나. 검토의견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은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 폐지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각각 살펴보면,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심사 기능을 수행하고⁷⁾,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7) 「식품위생법」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개발·생산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함⁹⁾.

□ 폐지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게 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현행법상의 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①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②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것임¹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통합되는 3개 위원회의 정비사유를 “유사위원회간 통합”으로 밝히고 있는데, 통합되는 3개 위원회의 기능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 「식품위생법」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 각 위원회별 기능¹¹⁾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위원회	식품등표시광고자문 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최초로 유전자변형 식품등을 식용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성 심사 -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재심사 -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 요소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성 심사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 식품등의 실증제도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 또한,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각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위원의 자격요건에 다소간 차이가 있음.

- 참고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유전자변형식품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는 ‘식품영양’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의 경우 표시·광고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¹²⁾

1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99호)

< 각 위원회별 위원 구성¹³⁾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위원회	식품등표시광고 자문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 총 20명(공무원 4명, 민간 16명) -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구성: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위원: 30명(공무원 5명, 민간 25명) -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식품위생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구성: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위원: 27명(공무원 4명, 민간 23명) - 식품등 관계공무원 -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100명 이내 위원: 99명(공무원 6명, 민간위원 93명) -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이처럼 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다소간 차이가 있는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의 개정안에서 폐지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현행 10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① 식품위생·식품영양, ② 식품, 식품첨가물,

1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의 표시·광고, ③ 유전자 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있음.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비교 >

구 분	현행	개정안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u>100명</u> 이내 위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u>200명</u> 이내
위원 요건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u>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u> 4.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u>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식품위생·식품영양 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의 표시·광고 다. 유전자변형식품등

□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되는 3개의 위원회(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는 ‘식품안전’이라는 큰 맥락에서 유사점이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식품 분야를 대표하는 심의기구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0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의 소집 및 의결이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보다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횟수를 보면, 2022년 0회, 2023년 1회(서면), 2024년 2회(출석)에 불과함.

<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

(단위: 회)

구 분	총계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	서면	합계	출석	서면
2022년	13	0		0	13	8	5
2023년	21	1		1	20	13	7
2024년	18	2	2		16	6	1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 둘째,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3호(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와 제4호(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¹⁴⁾하고 있는바,¹⁵⁾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임명할 수 없음.

<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구 분			위원 수
공무원	제1호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민간	제5호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제2호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제4호	동업자조합 또는 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그런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8조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200명 이내로 확대하면서 ‘제1호의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미만(99명)까지 임명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각 분야별 위촉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는바,

14) 「식품위생법」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호(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하나, 실제 운영은 시민단체로부터 6명을 추천받아 위촉하고, 6명을 제외한 26명은 학계 및 학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위촉하고 있다고 설명함.

공무원인 위원과 각 분야 민간위원의 적절한 위촉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행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포함¹⁶⁾되어 있는 변호사를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5년 5월 기준 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6명이
고, 심의위원회로 통폐합되는 3개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13명(유전자변형식품등안전성심사위원회 4명,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위원회 5명,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4명)임.

< 3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 >

구 분	유전자변형식품등안전 성심사위원회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	식품등표시광고 자문위원회
현행법에 따른 위원 수 및 구성 요건	20명 이내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30명 이내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30명 이내 * 식약처예규
위원 수	20명	30명	27명
당연직 위원(공무원)	4명	5명	4명
위촉직 위원(민간)	16명	25명	23명

자료: 식약처

16)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식약처예규)

제3조(구성 및 임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식품등 관계 공무원
2.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셋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8조제4항은 현재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¹⁷⁾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심의위원회로 통합되는 3개 위원회의 기능을 분과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하의 위원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며,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 각 분야 민간위원의 참여가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¹⁸⁾에서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제도분과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1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분과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제도분과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분과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제도분과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식약처예규) 제9조¹⁹⁾에서는 영 제4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생제도 분과위원회는 2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넷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제2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각각 두어,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제도 분과위원회
2. 유해오염물질 분과위원회
3. 국제식품규격 분과위원회
4. 잔류물질 분과위원회
5. 미생물 분과위원회
6.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7. 위해평가 분과위원회
8. 방사능 분과위원회
9. 신소재식품 분과위원회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생제도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위원도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93